

# 特許情報의 流通과 活用

## 抄錄 · 索引 등 2次資料가 緊要



崔 春 彦  
 <韓國科技研 技術情報室長 · 理博>

### ① 序 言

國土가 狹少하고 資源이 貧弱한 우리나라가 經濟의 高度成長을 持續하기 위해서는 輸出擴大가 무엇보다도 効果的인 手段임을 우리는 잘 認識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昨年에 100億 弗의 輸出을 達成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先進工業國들의 輸入規制 強化, 先進國 및 中進國들과의 國際競爭深化라는 새로운 問題에 또한 直面하게 되었다.

이 問題의 解決을 위해서는 여러가지로 檢討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新製品開發에 의한 需要와 市場의 開拓, 品質向上, 原價節減 등에 의한 國際競爭力의 強化가 問題解決의 主要한 方案이 될 것이며 이것은 技術開發로서 뒷받침되는 것이다.

기술개발은 周知하는바와 같이 先進技術의 導入과 消化 改良, 그리고 自體技術의 研究開發로서 達成된다. 方法에 差異는 있지만 目標하는 바는 新製品과 新技術의 創出이다. 그런데 오늘날 世界의 모든 國家는 이 신제품, 신기술을 特許制度로서 保護하고 있다. 따라서 기술개발은 特許情報의 活用을 主要手段으로 삼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에서 內外國人들에 의하여 出願된 特許 및 實用新案은 1947年以來 1977年末까지 128,101件이 되고 있다. 이 數는 우리나라 工業所有權 出願의 43%가 된다. 30年餘에 約 13萬件이라는 출원은 많다고 할수 없으나 1973年頃부터는 大

略 年間 萬件以上の 높은 出願實績을 보이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와 密接한 通商關係를 가지고 있는 諸國들의 國內特許出願狀況을 보면 <表 1>과 같이 日本의 約 34萬件을 先頭로 해서 年間 約 70萬件에 達하고 있다. 이 莫大한 量의 出願 特許는 特許公報를 비롯한 各種資料에 의해서 入手할 수 있는데 技術개발의 主役을 맡아야 하

<表 1> 主要對韓通商國家의 貿易量과 特許(1976)

國 別	對韓貿易實績(百萬弗)			特許出願	特許登錄
	輸 入	輸 出	計	件 數	件 數
日 本	1,802	3,099	4,900	339,858 (78,842)	81,819 (41,502)
美 國	2,493	1,963	4,456	102,344	70,236
西 獨	398	238	636	102,814 (41,109)	34,561 (16,596)
캐나다	314	116	430	26,163	21,750
英 國	254	171	425	54,561	39,797
이 란	149	172	321	2,056	2,033
濠 洲	99	216	315	14,117	11,074
프랑스	89	163	252	39,890	29,754
和 蘭	198	30	228	14,639	3,589

註: 特許에서 ( ) 內의 數値는 實用新案인.

는 研究機關이나 企業들은 이 특허정보의 管理에 새로운 覺悟로 臨해야지만 技術革新의 國際의 潮流를 타고 갈 수 있을 것이다.

特許情報管理라는 말은 技術革新이라는 말과 함께 最近 많이 使用되고 있는 用語이다. 특히 特許廳이 發足하였고 이 특허청이 主導해서 企業內 特許專坦部署의 設置가 活潑히 進展되면서 부터 이 용어는 企業經營의 重要한 部分을 차지하고 있다. 特許情報管理란 具體的으로 말하여

關聯있는 特許情報資料를 蒐集하고 수집된 자료를 加工處理하며 또한 必要한 특허정보자료를 檢索해서 研究陣과 技術陣에 提供하는 것이 主된 內容이라고 할 수 있다.

## ② 特許情報資料의 種類

一般的으로 자료라고 하면 1次資料와 2次資料로 區別된다. 간단히 말해서 1차자료는 어떤 정보에 관한 最初의 자료로서 특허정보의 경우 特許明細書가 이에 該當된다. 2차자료는 1차 자료를 加工하여 目的하는 1차자료를 쉽게 찾아 볼 수 있게한 것으로서 各種抄錄, 索引, 目錄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現在 國內에서 流通되고 있는 특허정보자료를 살펴보면 國內特許의 1차 자료로서 특허청이 發刊하는 特許公報, 實用新案公報가 있는데 主要機關의 圖書室 및 公共圖書館에 配布되고 있으며 韓國特許協會에서 누구라도 購得할 수 있다. 2차자료로는 “工業所有權登錄目錄” 등이 特許協會에서 나오고 있고 特許 및 實用新案의 “分類表”와 “分類定義”가 특허청에서 發刊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나라 특허에 대한 抄錄誌라든가 分類別索引, 技術用語別索引 등 2次資料는 나오고 있지 않다.

한편 外國特許資料로서는 특허청에 1차자료에 屬하는 日本의 特許公報 및 公開特許公報가 있으며 美國의 特許明細書가 있고, 英國, 西獨을 비롯한 10餘個 國家의 특허에 대한 2차자료가 있다. 또 韓國科學技術情報센터(KORSTIC)에서는 美國, 英國, 日本特許에 대한 2차자료를 “外國特許速報”로서 旬刊으로 發行, 流通시키고 있으며 醫藥, 電氣·電子材料 및 電力·通信分野에 대한 英文版 “外國特許抄錄誌”를 半月刊으로 發行 流通시키고 있다. 그리고 科學技術專門研究機關에는 대개의 경우 美國特許의 2차자료인 “Official Gazette”, 日本特許의 抄錄誌인 “特許實用新案集報” “公開特許出願抄錄”과 日本科學技術情報센터가 編輯 發刊하고 있는 “外國特許速報 化學篇” 등이 있으며 化學分野에서 各國特許의 抄錄誌의 機能도 가지고 있는 “Chemical Abstracts”도 備置되어 있다. 全世界的으로 본다면 1년에 거의 100萬件的 特許가 出願되고 있는 것으로 推算되는데 여기에 대한 정보를 위에서 말한 여러 자료를 통해서 우리는 迅速히

入手할 수 있는 것이다.

## ③ 特許情報活用과 特許分類

특허정보는 연구기관이나 기업을 막는하고 研究開發計劃의 作成과 遂行에, 特許出願에 그리고 特許紛爭의 解決에 가장 많이 活用된다.

특허정보를 活用하기 위해서는 特許調査가 基礎가 된다. 그리고 實際로 특허조사를 하는데에는 다음과 같은 세가지가 要求된다.

- 1) 자료를 신속히 입수할 것
- 2) 자료가 充分할 것
- 3) 조사의 指標 또는 端緒가 豊富할 것

特許制度는 法律로서 規制되는 것이므로 문제를 處理함에 있어서는 適切한 자료에 立脚한 綿密한 조사의 뒷받침이 必要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新製品의 開發, 特許出願, 異議申請 등은 모두 時間을 重要視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속히 처리되어야만 한다. 그러므로 특허조사는 迅速性和 確實성이 要求되며 이것을 잘하기 위해서는 조사의 지표 또는 端緒가 많아야 하는 것이 當然하다. 더우기 현재처럼 특허정보의 發生이 洪水와 같은 狀況에서는 이것이 重要하다. 이미 말한바와 같이 國內特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分類別索引, 出願者別索引, 技術用語別索引 등이 없어 물론이지만 이런 2차자료가 整備된 외국 특허에 있어서도 分類가 가장 重要하고 効果의 인 조사의 지표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분류에 대하여 熟達되는 것은 特許情報活用을 위해 매우 必要한 일이다.

### 1. 韓國特許分類

우리나라는 1類에서 190類까지로 분류된 舊分類가 있었지만 1965년에 改正되었고 이 新分類도 다시 1978年 1月1日에 개정되었다. 현재의 분류는 1類부터 136類까지로 大分類되어 있으나 13(7)類, 13(9)類와 같이 類番號에 ( )를 붙인 것이 있어 實質的인 類의 數는 177이 되고 있다. 이 類(분류)는 다시 알파벳의 大文字로 表示되는 補助類(中分類)로 나어누지는데 그 總數는 1,104이다. 보조류는 十進法으로 細分展開되어 種目으로 되는데 한자리 標數의 種목을 基本種目이라고 하고 두자리이상 標數의 種목을

細部種目이라고 한다. 現在 全種目數는 24,608에 이르고 있으며 基本種目이 5,833이 된다.

## 2. 外國의 特許分類

日本特許分類는 우리와 거의 같고 類의 數가 174, 보조류의 數가 1,092, 전종목의 數가 23,466으로 분류되고 있다.

美國은 實際 使用하지 않는 54個의 No class를 包含, 總 444個의 class로 大분류되어 있고 이것은 다시 7萬 가까운 Subclass로 細分되고 있다. 美國特許調査에 필요한 分類關係資料로서는 分類表(The manual of classification), 分類定義(The class and subclass definition), 分類索引(The index to classification)의 세가지가 있다.

英國特許의 분류는 그간 많은 개정이 있었다. 현재의 분류를 보면 A에서 H까지 8개의 Section으로 나누어지고 Section은 다시 40개의 Division으로 나누어 A1, B3와 같이 數字를 붙여 표시하며 이것은 다시 約 500가까운 Heading으로 세분되는데 알파벳을 붙여 나타낸다. 英國特許調査에 필요한 자료로서는 特許分類表(Classification key)와 特許明細書 25萬件마다 發行되는 Abridgments of Specification이라는 抄錄誌가 有用하다. 參照索引(The reference index to the classification key)은 技術用語로부터 필요한 Heading을 찾는 데 편리하다.

西獨特許는 89개의 Class로 나누어지며 이것이 알파벳으로 표시되는 Subclass로 나누어지고 다시 Group으로 갈라진 다음 Subgroup로 세분되고 있다. 현재 Subgroup의 總數는 30,000程度이다. 西獨特許分類에 대한 자료로서는 특허분류표(Gruppeneinteilung der Patentklassen)와 특허분류색인(Stichwörterverzeichnis)이 있다.

## 3. 國際特許分類(International Patent Classification)

各國마다 특허분류가 다르다는 것은 國際的인 權利情報이고 기술정보인 특허자료의 활용에 큰 支障과 不便을 주는 要因이 되고 있다. 이 欠點을 除去하는 同時에 모든 나라의 특허자료를 自國의 특허자료와 함께 整理調査가 可能하게 되는 利點에 着眼하여 작성된 것이 國際特許分類

즉 IPC이다. 西獨特許分類를 기초로 해서 작성된 IPC는 1968년 9월 1일부터 사용되고 있으며 1975년에 一部 改正되어 현재는 國際特許分類 第2版이 나왔다.

외국특허의 IPC표시에 "Int.Cl."로 나와 있는 것은 IPC 第2版의 分類記號表示를 뜻하는 것이다. Section, Class, Subclass, Group, Subgroup의 5段階로 세분된 IPC는 現在 40個 國家에서 사용되고 있다. Section은 A에서 H까지 8개, Class는 두자리 수자로 표시되고 있는데 116개, Subclass는 母音子를 除外한 알파벳으로 표시되어 614개, Group 및 Subgroup의 총수는 51,530個에 이르고 있다.

昨年부터 우리나라에서도 특허분류에 IPC를 도입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간 特許協會가 IPC의 國譯版을 만들었지만 技術用語의 翻譯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指摘되고 있다. 그래서 특허청에서 보다 正確한 國譯版 發行을 別途로 準備中에 있는 것으로 듣고 있다. IPC의 國역 官의 完備와 함께 韓國特許의 IPC併記가 早速히 實施되어야 하며 韓國特許分類와 IPC의 對照表, 韓國特許의 IPC에 의한 색인, 技術用語에 의한 韓國특허색인등 자료의 작성과 유통이 특허정보관리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課題라 할 수 있다.

1972년에 WIPO와 Austria政府사이의 協定에 의해서 비엔나에 設立된 國際特許情報센터(International Patent Documentation Center)는 美國을 비롯한 約 40個國 特許의 書誌의 事項에 관한 데이터를 수집, 컴퓨터로서 관리하고 있다. 그리고 主要國家에서 公示된 특허정보를 一括하여 IPC別로 編輯한 색인을 마이크로피쉬로 발행하고 있는데 KORSTIC에서도 이것을 도입하여 국내서 서비스를 할 計劃이라고 하니 앞으로는 외국특허의 조사가 상당히 빨라지며 편리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특허는 새로 출원되는 것만이 調査對象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미 特許權利期間이 지나간 것까지를 包含하여 全體 出願特許를 모두 조사해야 하는 경우가 더 많다.

그러므로 각국의 특허분류의 實態를 沿革的으로 把握하고 있는 同時에 이에 숙달되어 있어야 한다.

#### ④ 結 語

한 技術分野에 대한 특허를 時系列에 따라 調査分析해보면 그 분야에서의 技術動向을 파악할 수 있는 동시에 技術豫測까지도 可能하다. 發明의 新規性調査를 主業務로 하고 있는 和蘭의 IIB (Insitut Inturnational des Brevets)의 報告에 의하면 先進技術의 정보는 특허공보에서 얻는 것이 91.3%이며 非特許文獻에서 얻는 것은 8.7%에 不過하다고 한다. 이것으로 미루어보더라도

도 우리는 특허정보의 활용에 더한층 努力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특허정보의 활용은 말로서 되는 것이 아니다. 첫째로 우리나라의 특허청을 비롯하여 여러 技術情報機關, 研究機關이 특허조사가 迅速容易하도록 적절한 2차자료를 작성하고 그 유통을 大幅擴大시켜야 한다. 그리고 둘째로는 모든 研究者, 技術實務者가 關聯技術分野의 특허정보자료를 수집하여 그 특허명세서를 細心하게 읽고 技術內容을 분석하는 習慣을 익혀야 한다고 생각한다. ♣

—10面에서 계속—

書面審理方式은 職權主義와 깊은 關聯性이 있음은 물론이나 구두심리방식에 있어서도 특허심판이 特殊性에 의하여 當事者主義의 色彩는 稀薄하며 實際特許審判에 있어서 職權주의의 색채가 있는 것이 現實이다. 즉 민사소송에서와는 달리 특허심판에서는 심판관, 항고심판관은 당사자나 참가인이 신청하지 아니한 이유에 대하여도 이를 심리할 수 있고 唯一의 증거라 하더라도 信憑性이 없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는 이를 採擇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또한 직권으로 새로운 증거를 탐지하고 그에 대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을 물을 수도 있음은 물론, 이를 유일한 증거로 채택하여 심결할 수도 있다. 이와같이 職權探知를 하도록한 法意는 특허심판은 當事者雙方間에만 한정되어 있는 사권의 쟁송인 민사소송과 달라 특허권의 효력 또는 그 범위를 對世的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그 심결의 효력이 일반산업계는 물론 나아가서는 社會一般의 利害得失과도 관계되어 심판을 適正히하고 審判制度의 信用을 維持하기 위한 公益上의 要求에 起因하기 때문이다. 심판관, 항고심판관은 당사자쌍방 또는 一方이 同一한 2이상의 특허심판에 대하여는 이를 併合하여 그 심리나 심결을 할수 있고, 병합하였던 것을 다시 分離하여 따로 심리나 심결을 할수 있다. 한편 특허법에서는 심판, 항고심판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判連인는 他審判, 抗告審判의 심결의 확정 또는 법원의 소송절차가 完結될 때까지 그 절차를 中止할 수 있고 이와 反對로 소송절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법원은 특허심판의 심결의 확정이 있을때까지 그 소송절

차를 중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⑦ 特許審判은 審決審判請求의 取下, 特許意願의 취하 또는 拋棄 등으로 終了된다.

특허심판에서는 민사소송에서와 같은 認諾이나 심판절차의 和解의 방식 등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에 의하여는 종료되지 않는다. 심결은 합의체로서의 심판관 또는 항고심판관이 행하는 판단의 표시로서 심판청구를 不適法으로 하여 각하하는 심결과 청구를 容認(成立)하는 심결, 그리고 청구를 棄却(不成立)하는 심결등이 있고 한편 審判長名義로 請求書를 각하하는 결정이 있다. 심판청구의 취하는 민사소송에서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취하할 수 있으나 특허심판에서는 審理終結의 通知가 있는 후에는 취하할 수 없고 또한 答辯書의 提出이 있고 다음에는 相對方의 承諾을 얻지 아니하면 취하할수 없으며, 당사자사건의 경우에 있어서는 항고심판이 취하되면 심판 1심의 심결이 확정된다.

⑧ 끝으로 特許審判과 민사소송과의 관계를 언급하면 민사소송이란 私人的 要求에 의하여 私法上的 權利 또는 이익을 보호할 목적으로 利害關係의 紛爭을 해결하는 절차인데 대하여 특허심판은 國家產業發展이라는 公共目的의 實現과 國民의 權利救濟라는 2重性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서 즉 前者는 私人相互間의 이해를 調停하는 제도인데 대하여 後者는 공공목적의 실현과 동시에 私的紛爭을 해결하려는 제도로서, 相互相違點이 있으나 한편 다같이 國家에 의한 재판의 形式을 取하여 國民의 權利를 救濟하는 절차라는 점에서 相通된다. ♣